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2. 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11. 19. 김종선 의원 외 5명
- 나. 회부일자 : 2021. 11. 22.
-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위원회(2021. 12. 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종선 의원

가. 제안이유

조례 문구 중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중복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법
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문의 제목 변경(안 제3조)
 - “제3조(조례의 범위)”를 “제3조(적용 범위)”로 변경
- 2) 불필요한 중복 표현 삭제 정비(안 제6조제1항)
 - 제3호, 제7호의 “구 관할 구역” 삭제
- 3) 조문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8조제1항)
 - “구민”을 “누구든지”로 변경

3. 검토보고 (신준호 전문위원)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조문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문구의 간결성을 도모하고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되는 오류 등을 바로잡아 원래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는 등 조례로서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어 법령문의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는 자치법규 입안 작성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되는 문장 등은 길고 복잡하므로 원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하려는 것임.
- 따라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상위법령에 위반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